

광주광역시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

1. 제안이유

-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(이하 “통합 조례”)가 2003년 12월 31일 폐지됨에 따라 「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」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광주광역시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
 - 여성위원 : 여성위원의 3분의 1이상 위촉(안 제6조제2항)
- 회의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 - 회의소집 : 재적위원 3분의1이상 요구 시 소집 규정 추가(안 제8조제2항)
 -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통지 규정 신설 (안 제8조제3항)
 - 회의내용 및 회의록 공개 원칙 규정 신설(안 제8조제7항)
- 위촉의 해지사유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8조의 2)
 - 위촉 해지 사유 명시

3. 참고자료

- 광주광역시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
-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(구)

4. 검토의견 (전문위원 : 서 동 근)

본 조례 개정안은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(이하 “통합 조례”)가 2003. 12. 31폐지됨에 따라 「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」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그 내용을 보면

안 제6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

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

⇒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이 경우 여성위원은 위촉위원의 3분의1이상인 되도록 한다로 보완한 것은 여성위원 참여를 확대한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

④“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”를

⇒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,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동안 재임한다를 신설 보완하였음.

안 제8조(회의)

②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“를

⇒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.“ 이 경우 재적위원 3분

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1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”로 개정된 것은 위원들의 회의 소집 요구 건을 추가함으로써 탄력성 있는 회의운영 방법이라 생각합니다

③위원회는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를

⇒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“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”로 개정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는 회의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생각합니다.

⑥“위원회는 출석위원, 임의안건, 발언내용, 결정사항 등 회의 개최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”를

⑦“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”로 각각 신설함으로써 위원회 회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안이라 생각합니다

안 제8조의2(위촉의 해지)

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촉을 해지하여야 한다.

1.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2.신체, 정신상의 이상 등으로 임기내에 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3.위원회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령, 조례 등이 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

4.지방공무원법 제 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, 다만,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.

5.기타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각각 신설 보완한 것은 폐지된 통합조례의 취지를 반영한 안이라 생각되며,

안 제9조(기금관리공무원)①

1. 기금운영관 : “사회산업국장”을 “업무담당국장”으로

2. 기금분임운영관 : “사회복지과장”을 “업무담당과장”으로

3. 기금출납원 : “담당주사”를 “업무담당주사”로 각각 개정된 것은 탄력성 있는 행정운영방안이라 생각합니다.

안 제11조(수당의 지급)을 ⇒(실비보상)으로 개정하는 안은 광주광역시 서구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으로 사료됩니다.

위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“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운영등에관한조례”(이하 “통합 조례”)가 2003. 12. 31일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통폐합 조례에 일괄 적용하는 사항을 본 조례에 신설 보완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